

장애포괄적인 K-SDGs 수립을 위한 장애계 입장문서¹⁾

구성

- I. 장애포괄적 K-SDGs 목표 수립에 대한 총평
- II. 장애계 현안
- III. K-SDGs 지표 제안
- IV. 입장문서 작성 참여단체

I. 장애포괄적 K-SDGs 목표 수립에 대한 총평

-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장애인은 전세계 약 100억 인구의 15%를 차지하며, 그중 80%의 장애인이 개발 도상국에 살고 있으며 또한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음.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장애인을 포괄하지 않은 결과로 국제 사회의 주요한 개발 선도사업 및 지원 흐름에서 제외되어 온 점을 인식하여 국제사회는 SDGs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한편 장애인이 시민으로서의 능동적 참여를 인지함으로써 “Leave no one behind” 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포괄적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장애와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는 국내 장애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16.3%로 전체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인 수급률 3.2%(2016년 12.기준)에 비해 약 5.1배 높다.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교육, 건강, 노동, 문화생활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유엔은 장애 특화 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2006년도에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2008년도에 비준하여 현재 본 협약은 국내법과

1) 본 입장문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장애인 관련분야 보고 및 제언(2017, 한국장애포럼 &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을 수정 보완한 것임.

동일하게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며, 본 협약의 국내 이행 현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유엔에 보고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제1차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의 심의를 받고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의 권고를 받았다.(CRPD/C/KOR/CO/1)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도 폐지하고 장애인 자신의 소득을 근거로 개인적 지원에 대한 비용지급, 성년후견제도 폐지와 의사결정지원제도 시행,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 폐지와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 환자 조사와 구제, 효과적인 탈원화 전략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과 충분하고 공정한 재정적 지원의 제공 등 우리나라 장애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수준의 권고였다. 이에, 장애계는 K-SDGs 수립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하여 2018. 3.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장애인권리협약과 인천전략, 지속가능한 개발 2030 의제를 연관하여 고려하고 모든 국제개발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장애 포괄적이고 모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도록 조치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CRPD/C/KOR/QPR/2-3)

- UN SDGs는 아래의 표와 같이 목표 1, 4, 8, 10, 11, 16, 17 총 5개 목표의 세부목표 및 지표에서 장애를 12차례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장애인의 취약한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2018년 5월 21일 K-SDGs 작업반의 목표(안)에서는 을 살펴보면, 목표 3, 4, 10 총 3개 목표의 세부목표 및 지표에서 단지 4번의 언급으로 축소되어 있다.
- 이에, 한국 장애계는 K-SDGs 수립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유엔이 제시한 최소한의 장애포괄성 기준을 준수하여 세부 목표를 수립할 것과 지표 수립 시에는 ‘취약계층(vulnerable)’ 과 ‘포괄적인(inclusive)’ 조치에 대한 이행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장애인 구별 지표를 포함할 것을 핵심적인 방향으로 제시한다.

[표] 유엔 SDGs와 K-SDGs 장애관련 세부 목표 및 지표 비교

UN SDGs	KSDGs 작업반(안)
<p>빈곤 1.3 모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국가별로 적절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 지표: 사회적보호 최저선/체계의 적용을 받는 인구비율 (성별, 특수아동, 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임산부/신생아, 산업재해피해자, 소외계층별)</p> <p>교육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에게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 동등한 접근 보장 지표: (여성/남성, 농촌/도시, 부의 하위/상위 20% 및 장애상태, 토착민, 분쟁피해자 등 기타: 데이터가 제공되는 기준에 의한) 동등성 지수 4.a 아동, 장애 및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세우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인 효과적 학습환경을 제공 지표: (a) 전기; (b) 교육 목적의 인터넷, (c) 교육 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들을 위한 개선된 교육기반 시설 및 자원 (e) 기본적인 식수 시설; (f) 성별로 구분되는 기본적인 위생시설 그리고; (g)(WASH 지표 정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손 씻기 시설에 접근 가능한 학교의 비율</p> <p>경제성장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달성 지표 8.5.1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 수당 (직업별, 연령별 및 장애인별) 지표 8.5.2 실업률 (성별, 연령별, 장애인별)</p> <p>불평등 완화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 10.2.1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인별) 지속가능한 도시</p>	<p>보건 웰빙 3. 지표 -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산출(성별, 지역규모, 소득, 장애여부, 취약계층별 가용 데이터의 세분화)</p> <p>교육 4.5 지표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산출(성별, 지역규모, 소득, 장애여부, 취약계층별 가용 데이터의 세분화)</p> <p>불평등 완화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여부 혹은 여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강화 증진한다. 지표 - 인구집단별(성, 연령대, 장애유무 등)</p>

<p>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도로안전을 개선하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대한 접근을 제공</p> <p>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별, 성별 및 장애인별)</p> <p>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p> <p>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시가화 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 (연령, 성 및 장애인별)</p> <p>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상태별, 발생 장소별)</p> <p>평화</p> <p>16.7 모든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지향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보장</p> <p>16.7.1 국가 전체적 분포와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보직 분포비율(연령, 성별, 장애인 및 인구집단별)</p> <p>16.7.2 의사결정이 통합적이고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 및 인구 집단별)</p> <p>파트너십</p> <p>17.18. 2020년까지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세분화된(소득, 젠더, 장애여부 등) 데이터의 가용성을 대폭향상하기 위해 역량강화지원</p>	<p>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의 불평등을 줄인다.</p> <p>- 인구집단별(성, 연령대, 장애유무 등) 고용률</p>
--	---

II. 장애계 주요 현안 (**2018년도 정부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한 이슈 및 입장 업데이트 요망

1.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2014년)의 이행

- 2014. 9.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평가하고 최종견해를 발표(CRPD/C/KOR/CO/1)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권고

-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배제조항(제15조)의 차별시정
- 장애판정과 장애인등급제 개선, 부양의무제도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소득에 맞는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 정신병원과 장애인시설 탈원화와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통합 달성
- 성년후견제도, 정신보건복지법 강제입원제도 등 정신장애인등에 대한 법적 차별 폐지와 대안 마련
- 여성장애인 가중차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정책과 법률개발 시행
-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부공무원, 법관, 국회의원, 언론과 대중에 대한 장애인권리협약 교육, 홍보
- 재난방지정책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 장애인재난계획에 2015-2030 센다이 재난예방 기준과 인천전략 목표 7 포함
- 통합교육 시행
- 장애수당과 연금 현실화
- 최저임금법 장애인 차별에 대한 보상,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노동시장 차별 법령 폐지
- 장애통계에 대한 성, 연령, 인종, 손상, 거주지, 지역, 교육, 고용상태, 수당 등 구성요소로 분할되는 장애통계 수집, 분석, 배포
- 장애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실행
- 국가인권위원회 기능강화와 장애인들과 대표기관의 정책, 협약이행 모니터링 참여

2. 부양의무제 및 장애등급제 폐지 (세부목표 1.3.1 및 1.4.1 관련)

- 한국에서의 사회적 보호 최저선/체계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의 가구 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 계층가구가 60.8%이며, 일반가구는 31.9%로 나타남. 이 중 장애인가구는 전체 1,014,177 가구 중 18.9%인 191,723 가구임. 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134,489명으로 나타남
- 그러나 부양의무제로 인해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자격을 박탈당하고 있고, 또한 1급부터 6급까지 구분되고 있는 장애등급제도로 인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신청이 1급 및 2급 및 중복장애로 인한 중증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장애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 주거, 교육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기초보장 수급가구 집단과 별 차이가 없으며, 때로는 수급가구보다 더 열악한 생활수준에 놓여 있음. 특히 장애인계층은 장애의 특성에 따라 기본욕구 충족을 위해 부가적인 지출이 더 많이 발생함. 장애인계층은 외형적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활은 수급가구보다 더 열악한 경우가 발생하여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3.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영양통계 산출 (세부목표 2.1.1 영양 부족 현황 관련)

- 2015 국민건강통계는 연령별, 성별, 거주지역별, 소득수준별 영양상태에 관한 통계자료가 제시되었음
-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장애인의 관한 통계가 작성되어왔으나 최근들어 장애인계층의 통계는 모두 삭제되어 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 이에 장애인단체는 제4차장애인정책5개년계획 수립 시부터 장애인의 영양상태에 관한 통계작성을 요구하였고 최근 들어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건강한 계층인 장애인의 영양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음

4. 장애인결식률 개선 (세부목표 2.1.2 관련)

- 장애인의 결식률은 장애인 건강을 해치는 직접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 비장애인에 비해서 4배나 높은 조사망률의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며, 끼니조차 걸러야 하는 상황은 장애인 개인의 자살과 가족 동반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한국의 장애인 19.2%는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M5-0-4] 경제생활 관련 어려움_4)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곤 한다

구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은 편	③+④ 그런 편
전 계		510	34.3	46.5	17.1	2.2	80.8	19.2
성별	남성	295	26.8	52.2	17.6	3.4	79.0	21.0
	여성	215	44.7	38.6	16.3	0.5	83.3	16.7
연령	7~18세	13	15.4	84.6	0.0	0.0	100.0	0.0
	19~39세	39	41.0	41.0	15.4	2.6	82.1	17.9
	40~64세	231	33.8	46.8	16.9	2.6	80.5	19.5
	65세 이상	227	34.8	44.9	18.5	1.8	79.7	20.3
장애정도	중증	191	19.9	60.7	19.4	0.0	80.6	19.4
	경증	319	42.9	37.9	15.7	3.4	80.9	19.1
조사 지역별	서울	190	25.3	47.4	25.8	1.6	72.6	27.4
	인천	66	40.9	40.9	15.2	3.0	81.8	18.2
경기도	경기	254	39.4	47.2	11.0	2.4	86.6	13.4
	충청	185	29.2	49.7	18.9	2.2	78.9	21.1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78	34.2	47.1	16.9	1.8	81.3	18.7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47	55.3	29.8	10.6	4.3	85.1	14.9
혼인상태	대학/대학원 졸업	10	20.0	80.0	0.0	0.0	100.0	0.0
	미혼	93	21.5	54.8	20.4	3.2	76.3	23.7
혼인상태	기혼/동거	323	39.0	42.1	17.6	1.2	81.1	18.9
	이혼/별거/사별	84	32.1	50.0	13.1	4.8	82.1	17.9
장애유형	지체	259	41.3	44.8	11.6	2.3	86.1	13.9
	뇌병변	55	32.7	38.2	27.3	1.8	70.9	29.1
	시각	53	37.7	37.7	18.9	5.7	75.5	24.5
	청각/언어	58	27.6	43.1	29.3	0.0	70.7	29.3
	내부/안면	27	25.9	48.1	22.2	3.7	74.1	25.9
	지적	41	12.2	65.9	22.0	0.0	78.0	22.0
가구원 수	정신	17	11.8	88.2	0.0	0.0	100.0	0.0
	1인 가구	61	24.6	50.8	18.0	6.6	75.4	24.6
	2인 가구	216	32.4	43.1	22.7	1.9	75.5	24.5
	3인 가구	121	35.5	49.6	14.0	0.8	85.1	14.9
장애발생 원인	4인 가구 이상	112	42.0	47.3	8.9	1.8	89.3	10.7
	선천적 원인	82	35.4	50.0	14.6	0.0	85.4	14.6
	후천적 원인	428	34.1	45.8	17.5	2.6	79.9	20.1

<출처> 장애인개발원(2016). 장애인복지 패널 구축 연구 부록. 546쪽

- 장애인 개인의 소득수준은 월평균 96.3만원으로 매우 낮은 소득수준을 나타내고 있음(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 이러한 낮은 소득과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말미암아 장애인 중 19.2%가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곤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곤 한다는 4점 만점에 3.13점으로, 매월 공과금을 내는 것이 힘들다(2.80점), 경제적으로 어려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2.78점) 등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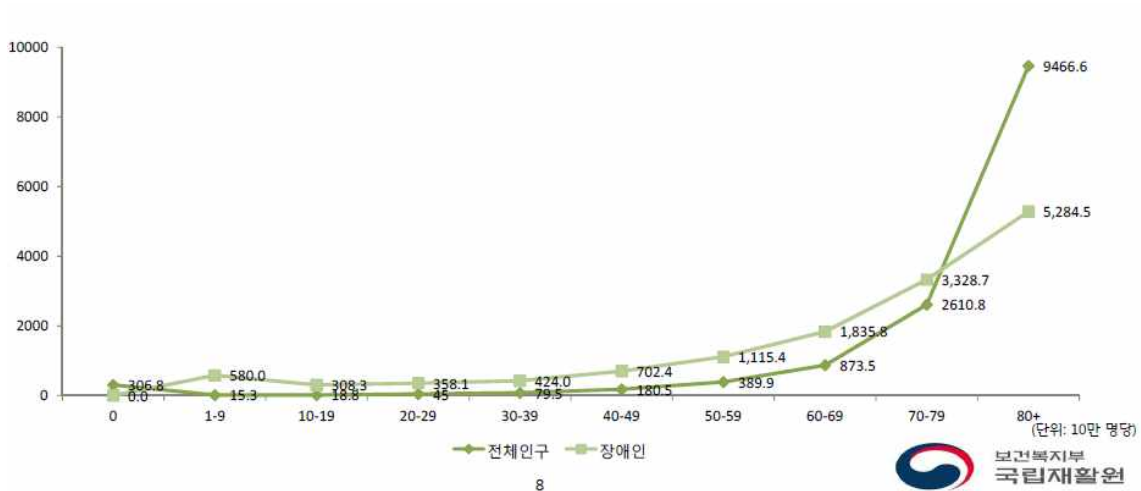
5. 장애인 조사망을 감소 (세부목표 3.2.1 및 3.2.2 관련)

- UN SDGs의 3. 건강과 웰빙에서의 목표 및 세부목표에서는 산모와 아동,

신생아 관련 지표가 제시되었고 장애인 사망률은 제외된 상태임

- 한국에서의 장애인 조사망률은 2164.8명으로 전체인구의 조사망률인 530.8명 대비 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조사망률>



* 출처: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장애와 건강 통계. 2016.9

-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의료환경 등 사회적 인프라가 열악하게 구축되었을 경우 그 격차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대별로 보면 0세의 경우 전체인구 중 신생아의 조사망률은 0명이나, 장애신생아의 경우 306.8명에 달함. 이는 장애로 인한 사망인지, 직간접적인 안락사로 인한 것인지, 의료적 처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세밀한 조사가 요구됨
- 또한 1-9세의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국민에 비하여 차이는 37.9배, 10-19세는 16.4배, 20-29세는 7.95배, 30-39세는 5.3배의 조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6. 장애인 자살률 감소 (세부목표 3.4.2 관련)

- 자살로 인한 사망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계층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사망률은 SDG의 세부목표에는 없는 상태임
-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에서 자살은 10순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장애인

의 경우는 7번째로 그 빈도수가 높음. 자살(고의적 자해)는 장애인 10만명 당 64.6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점은 장애문제로 인한 가족동반자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점임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자살대책에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있고, 장애인복지 정책의 비현실성을 고려할 때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사망원인 10순위>



* 2016 장애와 건강 통계 컨퍼런스 자료. 국립재활원 주최

7.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 (세부목표 3.b.1 관련)

-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를 기반으로 의료급여제도가 시행 중임. 또한 장애인들은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비급여비제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못 받고 있는 비율이 38.6%에 달함

[부표 M5-0-6] 경제생활 관련 어려움_(6)
경제적으로 어려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구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기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은 편	③+④ 그런 편	
전체	510	22.9	38.4	32.7	5.9	61.4	38.6	
성별	남성	295	19.3	34.2	40.0	6.4	53.6	46.4
	여성	215	27.9	44.2	22.8	5.1	72.1	27.9
연령	7~18세	13	7.7	89.2	23.1	0.0	76.9	23.1
	19~39세	39	25.6	30.8	35.9	7.7	56.4	43.6
	40~64세	231	17.7	37.7	38.5	6.1	55.4	44.6
	65세 이상	227	28.6	38.8	26.9	5.7	67.4	32.6
장애정도	중증	191	16.8	30.9	44.5	7.9	47.6	52.4
	경증	319	26.6	42.9	25.7	4.7	69.6	30.4
조사 지역별	서울	190	22.6	37.9	35.3	4.2	60.5	39.5
	인천	66	22.7	28.8	47.0	1.5	51.5	48.5
학력	경기	254	23.2	41.3	27.2	8.3	64.6	35.4
	초등학교 졸업 이하	185	21.1	36.8	36.2	5.9	57.8	42.2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278	21.9	39.6	33.1	5.4	61.5	38.5
	대학교/대학원 졸업	47	36.2	38.3	17.0	8.5	74.5	25.5
혼인상태	비혼당	10	10.0	60.0	30.0	0.0	70.0	30.0
	미혼	93	18.3	29.0	46.2	6.5	47.3	52.7
	기혼/동거	323	24.8	39.0	30.7	5.6	63.8	36.2
	이혼/별거/사별	84	22.6	44.0	26.2	7.1	66.7	33.3
장애유형	지체	259	27.0	42.9	25.1	5.0	69.9	30.1
	뇌병변	55	27.3	32.7	34.5	5.5	60.0	40.0
	시각	53	18.9	34.0	30.2	17.0	52.8	47.2
	청각/언어	58	17.2	41.4	39.7	1.7	58.6	41.4
	내부/안면	27	18.5	18.5	55.6	7.4	37.0	63.0
	지적	41	7.3	39.0	51.2	2.4	46.3	53.7
가구원 수	정신	17	23.5	23.5	47.1	5.9	47.1	52.9
	1인 가구	61	23.0	32.8	36.1	8.2	55.7	44.3
	2인 가구	216	22.2	32.4	38.0	7.4	54.6	45.4
	3인 가구	121	23.1	43.0	32.2	1.7	68.1	33.9
장애발생 원인	4인 가구 이상	112	24.1	48.2	21.4	6.3	72.3	27.7
	선천적 원인	82	20.7	37.8	34.1	7.3	58.5	41.5
	후천적 원인	428	23.4	38.6	32.5	5.6	61.9	38.1

* 출처: 장애인개발원(2016). 장애인복지 패널 구축 연구 부록. 548쪽

- 2017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나, 장애인의 의료이용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음.

8.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목표 4 관련)

- 국내 장애인의 교육 기회는 과거에 비하여 현격히 증가되었다. 2016년 말 조사된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수는 약 25,484명(초등학교 재학연령의 등록 장애인수 25,650명의 99.4%),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수는 약 31,839명(중등학교 재학 연령의 등록 장애인 수 37,891명의 84%)임. 또한 대학에 진학한 장애학생은 1,2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300% 가까이 증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인 비중은 장애인이 49.0% 그리고 전체 국민이 71.1%로 장애인의 고등

학교 이상 교육비율은 전체 국민 평균보다 약 22.1% 낮은 상황임(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장애인 교육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장애	뇌전 증 장애	전체
무학	11.7	12.3	10.6	19.4	8.8	9.7	5.0	2.2	6.8	10.1	4.5	0.0	11.4	2.9	12.0	11.6
초등학교	30.2	30.2	28.5	33.7	34.4	23.9	21.3	7.8	20.4	18.8	49.6	37.9	10.5	33.4	13.4	28.8
중학교	16.7	16.3	16.1	15.3	15.3	12.9	21.7	19.1	13.7	9.1	24.7	7.6	0.0	17.4	24.7	16.2
고등학교	26.1	25.7	27.9	20.1	25.2	45.6	38.8	42.3	34.7	42.4	11.8	34.5	43.5	36.4	45.2	28.1
대학이상*	15.4	15.5	16.9	11.5	16.2	7.9	13.1	28.6	24.3	19.6	9.4	20.0	34.7	9.8	4.6	1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39,570	284,918	274,483	275,885	20,931	179,209	18,113	105,001	71,876	8,120	15,984	11,839	3,012	16,706	9,505	2,635,152

주: * 대학이상 - 대학(3년제 이하)에서~대학원 까지 모두 포함
무응답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276쪽

- 장애 학생의 개인별 학습 수준에 맞는 양질의 교육 및 교육 기관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은 미흡한 현실임. 이에, 지난 2014년 10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제1차 이행 보고서에 대한 심의 이후 국내에 통합교육 정책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학교에서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며, 더욱이 정규학교에 등록한 장애학생들이 자신들의 장애와 관련된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 통합교육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과 학습 기관의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를 제공할 것, 일반학교의 교사 및 관리자 등 교육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장애학생에게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2016년 현재 65.9%에 그침에 따라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이 초등과정 7.9%, 중학교 과정 14.8%, 고등학교 과정 23.5%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장애학생은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폭력 및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12월에 발표한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에서의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은 36.7%, 놀림·비하·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은 24.0%, 금품 갈취, 과도한 장난, 강제 심부름, 따돌림 등의 괴롭힘은 19.2%, 상해·폭행·체벌 등의 경험은 1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한국에서의 교육 격차는 개발도상국가에 비하여 남아와 여아의 격차는 우리 사회에서 보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주민 자녀와 그 상대그룹간의 격차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바, K-SDGs 세부 목표 및 지표 설정에 장애학생에 대한 포용적인 학습환경 조성이 포함되어야 함.
- 이에, 현 작업반이 제시한 목표 4-a. “아동, 장애 및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세우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인 효과적 학습환경을 제공”에 대한 삭제를 철회할 것과 본 문서의 ‘III. K-SDGs 지표 수립을 위한 장애계의 제언’의 세부 내용을 참조하여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환경 달성을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언함.

9. 장애여성의 인권 보장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목표 5 관련)

- 장애여성은 장애인이나 여자, 둘 중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 장애와 성별이 교차하고 공존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장애여성은 차별 경험은 ‘다중적’ 임.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써, 장애여성들은 젠더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폭력에 노출되며, 일상적으로 의사결정 및 참여과정에서 배제를 경험하며, 성차별 및 장애차별로 인해 스스로 통제권을 갖지 못하는 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장애여성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임신, 출산, 낙태, 양육 등)이 통제되거나 침해를 받기도 함.
-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장애여성이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마련해야 함. 장애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동등하고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적극적 조치를 마련해야 함.
- 현행 작업반의 제시안 5-1의 지표 중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 증진’을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 등의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의 차별을 구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여성의 폭력 피해에 대한 단순하 비율 조사보다는 폭력에 취약한 장애여성, 이주여성, 청소년 등을 위한 상담소 및 쉼터 제공 여부가 지표에 포함 되는 등의 예방 및 지원을 목표로 하는 지표 추가 제언.

10.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세부목표 6.2.1 관련)

- 우리나라의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직장생활, 교육, 사회참여의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장애인의 건강 활동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이를 위해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 이 실태조사의 조사결과 위생시설 전체의 설치율은 46.7%, 적정설치율은 38.3%임. 10군데 위생시설 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4군데도 안 되는 상황임
- 편의시설의 대분류인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중에서 안내시설과 함께 위생시설이 매우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위생시설 중 휠체어사용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대변기를 제외한 소변기나 세면대 등 다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위생시설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세면대로 설치율은 81.9%, 적정설치율은 54.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욕실로 설치율은 26.1%, 적정설치율은 21.2%임
- 위생시설의 세부항목 중에서 세면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항목이 20~40% 범위의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대변기 내부 공간에서의 편의시설 설치는 1.4x1.8미터에 맞추어 변기 등을 배치하고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건물 화장실 공간크기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화장실 관련 세부항목보다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됨
- 이로 인해 편의시설이 설치된 대변기도 이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44쪽.

11. 장애인 실업률 (세부목표 8.5.2 관련) 및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감소 (세부목표 8.6.1 관련)

- 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하여 장애계는 고용노동부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 및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보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장애인의 실업문제는 비장애인이 갖고 있는 실업문제에 비하여 더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함. 장애인은 실업시 비장애인에 비하여 노동유연성이 작아 타직장 또한 타직종으로의 전이가 매우 어려움
- 또한 취업상태에 있었던 장애인들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제도의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기 때문에 빈곤층으로의 진입, 사회적 관계의 차단 등 삶의 질 저하 뿐 만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장애인 실업률은 6.3%로 전체 실업률(2014.6) 3.5%에 비해 1.8배 높은 수준임
-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ILO(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63천명으로 추정됨.
- 성별로 보면, 남성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46.9%이고, 여성장애인은 22.5%로 남성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31〉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15~19세	46,953	4,333	3,074	1,259	42,620	9.23	70.94	29.06	6.55
20~29세	86,430	37,679	29,394	8,285	48,751	43.59	78.01	21.99	34.01
30~39세	177,905	110,432	98,225	12,207	67,473	62.07	88.95	11.05	55.21
40~49세	330,089	202,337	187,437	14,900	127,752	61.30	92.64	7.36	56.78
50~64세	811,944	421,299	397,960	23,339	390,645	51.89	94.46	5.54	49.01
65세이상	1,146,569	238,123	234,682	3,441	908,446	20.77	98.55	1.45	20.47
계	2,599,890	1,014,203	950,772	63,431	1,585,687	39.01	93.75	6.25	36.57
전국 ¹⁾	42,490,000	26,825,000	25,875,000	949,000	15,666,000	63.1	96.5	3.5	60.9

주: 1) 통계청, 『한국통계월보(2014년 6월 기준)』, 2014.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21쪽

-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남성이 34.0%, 여성이 66.0%로 나타났고 장애인구는 남성이 47.7%, 여성이 52.3%로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에서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에서 중졸이하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나 장애인구는 70.3%로 전체인구의 43.1%에 비해 약 1.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12.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감소 (세부목표 10.3.1 관련) 및 성적 괴롭힘에 대한 대처 (세부목표 11.7.2 관련)

-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 (47.1%) 보험제도 계약 시’ (45.4%), ‘초등학교 입학·전학 시 차별’ (38.8%)순으로 나타남.

〈표 2-7-22〉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입학	유치원(보육시설)	27.1	13.4	26.6	13.3	24.4	5.0	38.8
	초등학교	38.8	31.8	34.2	27.0	39.0	45.0	53.6
전학	중학교	31.6	25.7	25.8	15.9	30.0	33.7	48.6
	고등학교	25.1	18.2	21.6	12.7	21.0	8.1	42.6
학교생활	대학교	12.5	9.5	9.8	9.4	11.6	25.9	27.1
	교사로부터	18.7	9.8	30.4	9.7	12.1	28.6	32.0
	또래학생으로부터	47.1	38.3	44.0	32.1	45.6	59.7	65.0
	학부모로부터	13.7	7.8	23.8	7.8	6.9	16.4	25.5
결혼		16.4	12.5	20.6	16.3	16.4	32.9	48.9
취업		35.8	29.3	58.0	34.7	42.7	45.7	47.7
직장생활	소득	23.9	19.8	38.9	19.6	29.2	26.3	41.4
	동료와의 관계	20.0	14.5	28.2	16.5	33.6	30.5	37.3
	승진	13.3	9.7	26.5	12.2	15.2	15.1	25.3
운전면허 제도상(취득 시)		10.2	7.4	11.0	20.4	8.6	30.8	28.7
보험제도(계약 시)		45.4	41.0	55.6	37.0	40.1	56.0	67.7
의료기관 이용 시		4.6	2.9	7.8	4.6	4.6	2.5	9.6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1.9	0.7	1.9	2.6	7.8	1.4	1.4
지역사회생활		7.3	4.3	12.2	6.1	8.8	4.1	18.6

주 1)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2014년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인 실태조사」, 2015.

- 특히 보험제도 계약 시 발생하는 거부 문제는 심각한 차별 중의 하나임. 상법 732조는 심신상실자 등이 도박보험과 인위적 사고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해왔음
- 2006년 UN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비준 공포하였으나, 상법 732조를 이유로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e호를 유보한 체 이를 비준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규정의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 또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 조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임

13. 장애인 통합 사회 증진 (목표 11 관련)

○ 목표 11.1 주거관련

-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과 주거취약계층의 감소 지표가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거주시설 3만여 명, 정신의료기관 8만여 명, 노인요양시설 13만여 명 등의 사람들이 시설에 고립된 삶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 필요.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임대주택의 일정 범위를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 완전한 자립의 중간단계인 ‘자립생활주택’ 등의 형태가 있으나, 이 두 경우 모두 입주하는 과정이 쉽지 않음. 탈시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선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와 더불어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물량 확대가 필요함. 자립생활주택은 탈시설 당사자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자립생활주택 계약의 주체가 운영자인 현재의 제도가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 계약으로 변화하여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거의 모델로 정착될 필요가 있음. 최근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계약자가 되며 주거공간에서 필요한 일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운영 중인 ‘지원주택’ 등의 형태가 있으나, 자립생활주택이나 지원주택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주거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 편차가 있으며,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려움.
- 2015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약 250만명 중 2,225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69%가 저소득층으로 구분되고 있음. 그리고 그 중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장애인가구 중 26.2%에 달함.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공공임대 거주비율이 높으며, 특히 장기공공임대의 비율이 가장 높음.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높으며 가장 희망하는 주거환경을 ‘주거비 지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으로 58.8%가 꼽음.
-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탈시설 계획 및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지원 체계 마련,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할당제 도입,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주택 서비스 및 주거지원 서비스 마련,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지원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
-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계와 ‘탈시설민관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증진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및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목표 11.2 대중교통 접근성 관련

-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해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은 한국 정부에게 “농어촌 및 도시 지역에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버스 및 택시의 수가 적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이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공공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공이동정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보장을 위한 활동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로 휠체어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어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 이용자들이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으로 확대 되었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2005년) 제정을 비롯하여 2003년 국어사전에는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등재되는 등의 발전을 이룸.
- 그러나 지난 15년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저상버스 목표 보급률 41.5%에 비하여 19%에 머물고 있으며, 광역버스의 경우는 전체 20대가 안 되어 전체 1%의 수준에 불과함
- 현재 우리 사회의 대중교통이 교통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반드시 필요함. 장애인 콜택시가 그 중 하나인데, 지역별로 운영주체가 다르다 보니 일관되게 운영되지 않고, 지역별 편차가 큼. 또한 기본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종류와 양이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대기시간이 매우 길거나 예측할 수 없고, 지역간 이용이 제한됨.
- 이에, 교통약자들을 위한 공공의 교통체계 및 베리어프리 교통 시스템의 수립이 필요하며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 교통 전문가의 배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관련 예산 담보가 요구됨.

III. K-SDGs 지표 수립을 위한 장애계의 제언

- 지표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구별통계(disability disaggregated data)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함에 따라 국내 지표 설정 시 장애인에 대한 구별 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CRPD/C/KOR/QPR/2-3)
- 아래의 지표는 유엔 지표를 기준으로 수준 및 보완을 제시하였다.

목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1)	지표 현황 및 제언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차원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의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10월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된 『지표로 보는 이슈』에서 한국의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30.2%로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체가구 빈곤율인 16.3%에 비해 13.9% 높게 나타남(2015년). ○ 지표에 장애인 비율 포함 필요.
	1.3 모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국가별로 적절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	1.3.1 사회적보호 최저선/체계의 적용을 받는 인구비율 (성별, 특수아동, 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임산부/신생아, 산업재해 피해자, 소외계층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보호 최저선과 최저 생계비와의 비율 포함 필요.
	1.b 빈곤종식 활동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성	1.b.1 여성, 빈곤층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지출되는 정부의 반복적인 자본의 지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높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장애인복지지출의 낮은 수준임. 한국의 장애인복지지출(GDP 대비 0.49%)은 OECD 평균(GDP 대비 2.19%)의 1/4, 가장 높은 덴마크(GDP 대비 4.71%)의 1/9수준에 불과함. ○ 지표에 장애인 비율 포함 필요.
3. 건강 및 웰빙	3.1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산모사망 비율을 10만 생명 출산 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3.1.1 산모 사망률(MMR) 3.1.2 숙련된 보건인력이 진료에 참여한 생명출산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에 장애여부 추가 필요 ○ 장애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함. 장애전문 보건인력 비율 포함 필요.
	3.2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정상출산 1000명당 최대 12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5세 이하 유아의 사망률을 정상출산 1000명당 최대 25명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예방 가능한 신생아와 5세 이하 유아 사망 종식	3.2.1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장애인관련 통계)에서 사용하는 연령구분은 10세 구간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관련 데이터 수집의 실효성을 위한 조정 필요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열대 풍토성 소외질환 등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간염,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에이즈 감염자의 수(연령별, 성별 및 주요 인구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비율 포함 필요

목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1)	지표 현황 및 제언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목적을 포함한 성 그리고 임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임신보건을 국가 전략 프로그램에 통합을 보장	3.7.1 현대화된 방식의 가족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임신 가능한 연령대 (15~49세) 여성의 비율	○ 장애인의 비율포함
		3.7.2 동일 연령대 여성 1,000명당 청소년 (10~14세, 15~19세) 출산율	○ 지표 신설 3.7.3 국가전략 프로그램 안에 장애를 가진 산모 및 장애를 가진 태아에 대한 정보 및 교육 내용 포함 여부
	3.8 재정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으며 적당한 가격의 양질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보편적인 보건 서비스 달성	3.8.1 일반 대중과 가장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임신, 모성, 신생아 및 아동 건강, 전염병, 전염되지 않는 질병 그리고 서비스 능력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추적개입을 기초로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의 보장으로 정의되는 필수 보건 서비스 범위	○ 장애인 비율 추가 필요 ○보건의료시설과 장비 그리고 서비스가 실제로 장애인들이 접근가능 지표 추가 필요 ○장애인의 보건의료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문제, 의료장비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안전성 지표 추가 필요 ○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통계를 위한 추가지표 개발 필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숙련된 의료인력과 안전한 약품과 장비, 그리고 보건위생시설 비율 포함 필요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기관의 수, 보건의료의 질 그리고 전국적 분포도에 관한 통계 지표 필요
		3.8.2 인구 1,000명 당 건강 보험이나 공중 보건 시스템으로 보호를 받는 인구 수	○장애인의 의료비 자부담 통계 (비급여 포함) 지표 필요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4.1 2030년까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무상의 공평한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모든 소년, 소녀들에게 보장	4.1.1 (a) 초등학교에서 3/2 이상을 마친 (b) 초등학교 졸업학년 (c) (i) 읽기 및 (ii) 수학에서 최소한의 숙련도를 보이는 중학교 졸업학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비율 (성별)	○장애학생에게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2016년 현재 65.9%에 머물름 ○또한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이 초등과정 7.9%, 중학교 과정 14.8%, 고등학교 과정 23.5%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 필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족률”,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의 학생 정원 초과 비율” 등을 지표에 추가 필요
	4.2 2030년까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소년과 소년들이 양질의 조기 아동개	4.2.1 건강, 학습 및 심리 사회적 행복 측면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5세 미만 아동의 비율 (성별)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중재하기 위한 장애조기발견체계 구축 미흡 (발달장애 정밀진단비용 지원으로 연 2억

목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1)	지표 현황 및 제언
교육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기회 증진	발, 보육, 그리고 초등학교 사전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	4.2.2 (공식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되기 전 한 해 동안) 체계적 교육에 대한 참여율 (성별)	원 미만의 국고가 책정되어있을 뿐임)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지적장애 등 6개 장애유형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서 모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편적인 조기중재 프로그램으로 역부족 ○“0세~5세 미만의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고위험 발견 비율” “등록 장애영유아의 발달재활서비스(언어치료 등의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등을 지표에 추가 필요.
	4.3 2030년까지 대학교육을 포함하여 적당한 양질의 기술, 직업, 그리고 고등교육에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성별)	○2016년 대학에 진학한 장애학생의 수가 1,200여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300%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대학의 수학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은 미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율” 및 “대학 재학 장애학생 대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 비율” 등을 지표에 추가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혹은 직업적인 능력을 갖춘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가진 청소년/성인의 비율 (능력유형별)	○장애인의 일반고용 확대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근로지원인제도 및 직무지도원제도의 개선 필요 ○“등록 성인 중증장애인 대비 근로지원인 및 (발달장애인)직무지도원의 비율” 지표로 추가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에게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 동등한 접근 보장	4.5.1 (여성/남성, 농촌/도시, 부의 하위/상위 20% 및 장애상태, 토착민, 분쟁피해자 등 기타: 데이터가 제공되는 기준에 의한) 동등성 지수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교육)은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교육과 평생교육 보장을 규정 ○우리나라도 학령기 장애학생의 70%가 일반학교(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어 통합교육의 형식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통합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 미흡 ○직업교육을 포함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필요 ○“전체 특수교육예산 대비 통합교육 예산의 비율” “성인장애인 대비 평생교육을 받는 성인장애인의 비율” 등을 지표로 추가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 및 남녀 성인 상당	4.6.1 해당 연령대 중 기능적인 능력 즉, (a) 독해	○문해교육을 위한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필요	

목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1)	지표 현황 및 제언
	수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	및 (b) 산술 능력에서 적어도 특정 수준의 숙련도를 갖춘 인구의 비율 (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성인 장애인에게 문해교육 또는 학력보완교육을 제공하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 “성인 장애인의 수 대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율” 지표에 추가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함에 대한 공감을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	4.7.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인식 제고)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중 인식 캠페인 등의 조치를 협약당사국이 취할 것을 규정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및 대중 캠페인의 연간 횟수”를 지표에 추가
	4.a 아동, 장애 및 성 인 지적인 교육시설을 세우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인 효과적 학습환경을 제공	4.a.1 (a) 전기; (b) 교육 목적의 인터넷, (c) 교육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들을 위한 개선된 교육기반 시설 및 자원 (e) 기본적인 식수 시설; (f) 성별로 구분되는 기본적인 위생시설 그리고 ;(g)(WASH 지표 정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손 씻기 시설에 접근 가능한 학교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서는 장애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할 적당한 편의 혹은 합리적인 편의가 규정되어 있음 ○ 장애학생의 학습 및 교내외 활동에 필요한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교육 보조인력, 의사소통 기구 등을 포함한 “장애학생에 대한 적당한 교육 편의 제공 충족율”을 지표에 추가
5. 양성 평등 달성 그리고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1.1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성차별 금지와 성평등 추진 정책 안에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가 경험하는 <복합적인 차별>을 인식할 수 있는 지표 마련 필요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	5.2.3 공적·사적 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 피해에 대한 비율(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별 등)	<지표 추가> 장애여성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쉼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여성 피해자들이 보호정책에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과 베이징 행동강령 및 그 검토회의 결과문서에서 합의한 대로 성 및 임	5.6.3. 장애여성이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장애여	<지표 신설> 공식 교육 안에서, 밖에서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게 준비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목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1)	지표 현황 및 제언
	신 보건과 임신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성의 권리를 차별하는 법의 유무	보장해야 할 수 있도록 지표 마련. 우생학에 기반하여 장애인의 재생산권리를 침해하는 모자보건법 14조 1항 폐지 필요
	5.b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실용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증진	5.b.1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 (성별)	휴대폰을 소유한 장애여성의 비율과 시각장애여성, 발달장애여성 등 다양한 장애유형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보조적 기술 존재 유무 확인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신장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집행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5.c.2 장애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유무	<지표 추가> 장애여성 역량강화 정책이 단순한 직업기술을 넘어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8. 모두를 위해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	8.3 생산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해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공식화와 성장을 독려	8.3.1 비농업부문으로의 비공식 취업 비율 (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리는 최저임금법의 조항으로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고 있음 비공식 취업 비율에 장애인 추가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달성	8.5.1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 수당 (직업별, 연령별 및 장애인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조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적용, 이에 따라 다수의 작업장과 도시외곽지역 농장 등에서 강제노역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후에 문제발생시 해당법에 따라 법망을 피해감. 이에 따라 지표에 장애인의 최저임금 지급 여부확인을 위한 지표 추가 필요 장애인구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39.7시간으로 전체인구의 주 평균 근무시간인 43.6시간 보다 적으며, 전체인구의 평균임금이 231.4만원이고 장애인구의 평균임금은 174.7만원으로 전체인구의 약 75%정도이다.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15-24세)의 비율	15~29세 장애인 경제활동비율은 31.7%, 실업률은 17.5% 고용률은 26.1%으로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큼에 따라 장애인 통계 세분화 수집 필요
	8.7 강제노동 근절, 현대식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8.7.1 아동 노동을 하고 있는 5-17세 아동들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임금체불, 인신매매 등이 여전히 존재, 장애인의 고용형태와 임금지급 확인을 위한 지표 추가
	8.10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독려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금융 기관의 역량 강화	8.10.2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거나 개인적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15세 이	상법 732조의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의 보험 가입 거절 사례 다수. 은행 금융서비스 이용시 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이유로 통장개설 및 체크카

목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1)	지표 현황 및 제언
		상) 성인 비율.	드 개설 거절, 장애인의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 이용 비율 추가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1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 인구의 소득성장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 및 유지	10.1.1 하위 40% 인구 및 총 인구 중 가구지출 또는 1인당 소득의 성장률	○2015년 장애인통계 결과 67.4% 소속계층 하층으로 분류, 장애인월평균 소득(223.5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430.2만원)의 52.0%수준, 전체 장애인 가구 44.6%가 월 150만원 미만 소득. 비장애인가구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하위 40% 중 장애인가구의 비율과 가구지출 등의 별도 지표 신설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입법, 정책 그리고 조치를 강화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과에 있어서 불평등을 감소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사건 전체사건 중 약 53% 차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비율 포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률 및 정책, 제도에 대한 폐지 및 개정 비율 포함
	10.4 재정, 임금,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평등확대를 달성	10.4.1 임금 및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GDP 중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	○장애인 노동시장 진입의 근본적인 어려움 발생, 장애인 노동시장 진출 비율 추가 ○ 장애인 고용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 유무 지표 포함
11. 지속가능도시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당한 가격의 주택 및 기초 서비스에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를 개선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불충분한 시설을 가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의 비율	○현재, LH SH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고지대에 위치하고 건물내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신체장애인의 경우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 그에 따라 저소득장애인의 거주실태에 대한 별도 지표 신설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대한 접근을 제공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연령별, 성별 및 장애인별)	○ 전체 대중교통편(지하철, 버스, 택시 등) 중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교통편의 비율 지표를 추가함과 아울러 지역간 편차를 알 수 있는 지역별 설치비율 추가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지속가능 인간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비율	○ 도시 내 장애물제거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비율 지표 추가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	11.5.1 인구 100,000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 재난발생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 대응 매

목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1)	지표 현황 및 제언	
	을 두고,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뉴얼 실태 지표 추가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시가화 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 (연령, 성 및 장애인별)	○공공장소의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및 장애인접근성 가능 비율 지표 추가	
16.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6.1.1 인구 100,000 명당 의도된 살인범죄의 피해자 수 (연령별 및 성별)	대구시립희망원에서 2010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6년 7개월 동안 309명의 생활인(전체 정원의 26.9%, 연평균 46.9명)이 사망함. 이는 시설 구조의 폐쇄성으로 인한 일로 지역사회 적절한 사회보장 서비스의 미비로 발생한 사건임. 의도된 살인 범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사회보장서비스의 미비로 인한 사망을 포함 필요.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의 육체적인 체벌이나 정서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1-17세 비율 중 지역사회가 아닌 보육원이나 거주시설에 주거하는 비율을 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역사회 안 폭력 대응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 포함 ○학대피해 아동의 장애여부 확인 필요
		16.2.2 인구 100,000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중 파악되거나 파악되지 않은 인구 수; (성별, 연령별, 착취형태별)		○장애인 지표 포함
		16.2.3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8-24세 여성과 남성의 비율		○장애인 지표 포함
	16.3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수준의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16.3.1 지난 12개월간 폭력 피해자 중 피해를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신고한 인구 비율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형사사법 지원제도 비율 포함
		16.3.2 전체 교도소 수용자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수감자의 비율		○장애인의 교도소 수감시 지원제도 설치 비율 포함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의 비율 (부문별 또는 예산코드 및 이와 유사한 기준별)		공공서비스 영역에 참여하는 일이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인해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지표에 포함
	16.10 국내법 및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중		전체 TV 편성 프로그램 중 장애인을 고려하여 수화통역 제공 및 기타 사항

목표	세부목표 (169개)	지표 (241)	지표 현황 및 제언
효과적 이고, 책임 있 으며, 포용적 인 제도 구축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 보호	사자, 무역 노동조합원 및 인 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 해, 납치, 강요된 실종, 임 의구금 및 고문으로 확인 된 사건 수	을 지원한 지표 포함
	16.a 특히, 개발도상국에 서 폭력 예방 및 테러나 범죄 방지를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역량구축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관 련 법규나 제도를 강화	16.a.1 파리규정에 따른 독 립적인 국가인권기관의 존재	국가인권기관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한 인권지수 평가 신설 필요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 한 비차별적 법 그리고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	16.b.1 국제인권법에서 금 지하고 있는 차별에 근거 해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 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 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 의 비율 (연령별, 성별)	'장애별' 지표 포함

IV. 입장문서 작성 참여단체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정신장애연대